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증지”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계룡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가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시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되,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의 인영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자 수입증지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의 인영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

행장소, 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계통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인의 신고) ①증지를 판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면·동은 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수입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1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 실패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익일까지 계룡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그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민원공무원이 판매한 증지대금은 출납원이 다음날까지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증지의 소인) ①소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8조 (증지의 환매) ①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을 폐지한 경우에는 매수금액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19조 (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출납정리 및 검사) ①판매인·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보고) ①금고에서는 매월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되어 판매되던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보며, 기 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판매인으로 본다.

[별표1]

표찰

계룡시수입증지판매소

주소 :

성명 :

80cm

10cm

[별표2]

소 인 의 규 격 (지름 2.5cm)

(시)

소 인

년 월 일

계 룡 시

(면·동)

소 인

년 월 일

계 룡 시
○○면·동

(직속기관)

소 인

년 월 일

계룡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판매인(폐지)신고서			처리기간	
			7일	
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본인은 계룡시 수입증지를 판매(폐지)하고자 판매인(폐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판매소설치장소		(에서 m)		
판매소 약도				
계룡시장(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사본 1통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명의(위치)변경신청서

기 신 고 자	판매소 위치		명 의 (위 치 구) 변 경 사 유	판매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 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명 :

①

계룡시장(면·동장)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청구서

○ 판매장소 :

구분 권종	재고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환매)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계 룡 시 장 귀 하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 원부)		
관 리 인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 행 년 월 일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계룡시 금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illegible]

※ 조정카드는 1일 1매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입증지수불대장

년 월 일

년월일	구 분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수 입	매 수						
		금 액						
	불 출	매 수						
		금 액						
	잔 고	매 수						
		금 액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비 고